

#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KCA 3460

Date of issue: 2012-08-16

Revision date: 2013-08-02

Version: R0003.0002

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# 가. 제품명

- KCA 3460 [MSDS-710]

###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경화제  
- 사용상의 제한 : -

###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#### ○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  
- 주소 :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2로 218  
- 담당부서 : 환경안전팀  
- 전화번호 : 061-688-3682, 061-688-3684  
- 긴급 전화번호 : 061-688-3507  
- FAX 번호 : 061-688-3686  
- 이메일 주소 :

#### ○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회사명 :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  
- 주소 : 서울 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, 시그니처타워 동관 8층  
- 담당부서 : 영업팀  
- 전화번호 : 02-6961-3464, 3481  
- 긴급 전화번호 : 02-6961-1114  
- FAX 번호 : 02-6961-3492  
- 이메일 주소 : epoxy\_domestic@kpb.co.kr

## 2. 유해성·위험성

###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급성 독성(경구): 구분4  
- 급성 독성(흡입: 증기): 구분4  
-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: 구분4  
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: 구분1  
- 인화성 액체: 구분3  
- 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: 구분3(마취작용)  
- 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: 구분3(호흡기계 자극)  
- 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: 구분2  
- 피부 과민성: 구분1  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: 구분1  
- 흡인 유해성: 구분2

###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#### ○ 그림문자



#### ○ 신호어

- 위험

## ○ 유해·위험 문구

-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
- H302 (경구)삼키면 유해함
- H305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
-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
-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
-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- H332 (증기)흡입하면 유해함
-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-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
-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(11항 참조(MSDS)).
- H413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의 우려가 있음

## ○ 예방조치문구

## 1) 예방

- P210 열·스파크·화염·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- 금연
-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.
- P240 용기·수용설비를 접지·접합시키시오.
- P241 폭발 방지용 전기·환기·조명·장비를 사용하시오
-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.
-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.
- P260 (분진·흙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를(을) 흡입하지 마시오.
- P261 (분진·흙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.
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.
-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.
-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- P280 (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)를(을) 착용하시오.

## 2) 대응

- P301+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도움을 받으시오.
- P301+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도움을 받으시오.
- P301+P330+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.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.
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.
- P303+P361+P353 피부(또는 머리카락)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.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/샤워하시오.
- P304+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.
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P310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.
- P330 입을 씻어내시오.
-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.
- P333+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·주의를 받으시오.
-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.
- P370+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(5항 참조).

## 3) 저장

- P403+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.
- P403+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.
-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.

## 4) 폐기

-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·용기를 폐기하시오.

**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**

## ○ NFPA 등급 (0 ~ 4 단계)

- 보건 : 3, 화재 : 3, 반응성 : 0

#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	m-Xylenediamine adduct	- / -	70 ~ 85
n-Butyl alcohol	-	71-36-3 / KE-03867	15 ~ 25
Xylene ; Dimethylbenzene	-	1330-20-7 / KE-35427	5 ~ 10

### 4. 응급조치 요령

#### 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.

####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부는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척하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- 피부 확산을 방지하시오.

#### 다. 흡입했을 때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.

#### 라. 먹었을 때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- 만약 삼켰다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도록하고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####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###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####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분말, CO2, 알콜포
- 분말소화약제, 이산화탄소, 물뿌림 또는 정규 포말
- 워터젯을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
####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인화성 액체 및 증기
-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
-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
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
-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
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- 고인화성: 열, 스파크,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
- 누출물은 화재/폭발 위험이 있음
- 실내, 실외,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
-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
-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(flash back)할 수 있음

-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

#### 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때까지 충분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마시오.
- 필요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.
-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.
- 인화점이 극히 낮은 물질들로 화재진압시 주수소화 효과가 작을 수 있다.

### 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####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
-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.
-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
- 보호구를 착용한 후 손상된 용기 또는 누출된 물질을 처리하시오.
- 유출 액체 및 누출 부위에 직접 주수하지 마시오.
- 피부 접촉 및 흡입을 피하시오.

####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시오.

####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다량누출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소량 누출: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.
- 용매를 닦아내시오.
-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시오.
- 폐수가 수로, 하수구, 지하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시오.
-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마시오.

### 7. 취급 및 저장 방법

#### 가. 안전취급요령
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시오.
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시오.
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.
-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.
- 열, 불꽃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.

#### 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오.
-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.
-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.
- 화기엄금
- 밀폐용기에 담아 수거하시오.
-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취급시 식물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.

### 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**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**

- **국내노출기준**
  - [n-Butyl alcohol] : TWA : C 50 ppm C 150 mg/m<sup>3</sup> - n-부틸알코올
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TWA : 100 ppm 435 mg/m<sup>3</sup> STEL : 150 ppm 655 mg/m<sup>3</sup> - 디메틸벤젠(오르토,메타,파라-이성체)
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TWA : C 0.1 mg/m<sup>3</sup> - m-크실렌- $\alpha$ ,  $\alpha'$ -디아민
- **ACGIH노출기준**
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C 0.1 mg/m<sup>3</sup>
  - [n-Butyl alcohol] : TWA 20 ppm
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TWA 100 ppm
- **생물학적 노출기준**
  - 해당없음

**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**

- 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
**다. 개인 보호구**

- **호흡기 보호**
  -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.
  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  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  - 방독마스크(직결식 소형, 유기가스용)
  -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(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)
  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)
  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: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- **눈 보호**
  -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하시오.
  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- **손 보호**
  -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.
- **신체 보호**
  -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.

**9. 물리화학적 특성**

가. 외관	
- 성상	액체(점성이 있는 액체)
- 색	투명한 노란색
나. 냄새	암모니아 냄새
다. 냄새역치	자료없음
라. pH	알칼리성
마. 녹는점/어는점	자료없음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> 117 °C
사. 인화점	> 27 °C
아. 증발 속도	자료없음
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	자료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자료없음
카. 증기압	자료없음
타. 용해도	자료없음
파. 증기밀도	자료없음
하. 비중	0.98 at 20 °C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자료없음
네. 자연발화온도	자료없음
더. 분해온도	자료없음
러. 점도	1,000~3,000cps at 25 °C
머. 분자량	자료없음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###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- 유해중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.

### 나. 피해야 할 조건
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십시오.
- 열, 불꽃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십시오.

### 다. 피해야 할 물질

- 자료없음

###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자료없음

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###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(호흡기)
  -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
  -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- (경구)
  - (경구)삼키면 유해함
- (눈·피부)
  -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  -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
  -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

###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- 급성 독성
  - \* 경구 독성
  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LD50 = 980 mg/kg Rat
    - [n-Butyl alcohol] : LD50 = 790 mg/kg Rat
  - \* 경피 독성
  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LD50 = 2000 mg/kg Rabbit
    - [n-Butyl alcohol] : LD50 = 3402 mg/kg rabbit
  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LD50 = 1590mg/kg(mouse)
  - \* 흡입 독성
  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LC50 = 2800 ppm 4 hr Rat
    - [n-Butyl alcohol] : Steam LC50 = 8000 ppm 4 hr Rat
  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LC50 = 10 ~ 20 mg/L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기니피그의 피부에 부식성, 흰쥐의 피부에 피하 출혈,괴사
  - [n-Butyl alcohol] : 토끼에서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중정도 자극성
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중증자극 유발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흰쥐를 이용한 시험에서 피부 부식성
  - [n-Butyl alcohol] :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심한 자극성
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중증자극 유발
- 호흡기 과민성
  -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
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기니피그 시험에서 감작성 양성률이 70%
- 발암성
  - \* 산업안전보건법
    - 자료없음

- \* **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**
  - 자료없음
- \* **IARC**
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3
- \* **OSHA**
  - 자료없음
- \* **ACGIH**
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A4
- \* **NTP**
  - 자료없음
- \* **EU CLP**
  - 자료없음
- **생식세포 변이원성**
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소핵 시험 결과 음성
  - [n-Butyl alcohol] :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하는 소핵시험 음성
- **생식독성**
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흰쥐(rat)를 이용한 경구 투여 시험에서 부모 동물에게 일반 독성이 인정된 용량에서 생식 독성이 나타나지 않음
  - [n-Butyl alcohol] : 임신한 흰쥐에서 흡입 노출시 어미에 독성이 인정되는 농도에서 태아의 골격 변이가 나타남.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**
  - [n-Butyl alcohol] : 사람에서 흡입 노출에 의해 두통 및 인두에 자극이 나타남. 동물 실험에서 마취 작용 또는 중추신경계 억제제가 나타남.
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마취작용을 일으킴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**
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흰쥐를 이용한 경구 투여 시험결과 구분 2의 기준값 범위 이상에서 중대한 독성 작용은 없음
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인체에 눈, 코 자극, 만성 두통, 가슴통증, 뇌파 이상, 호흡곤란, 청색증, 발열, 백혈구 감소를 일으키며, 호흡기계, 신경계기능 장애를 유발함
- **흡인 유해성**
  - [n-Butyl alcohol] : 탄소원자가 3-13개인 n-알코올류
- **고용노동부고시**
  - \* **발암성**
    - 자료없음
  - \* **생식세포 변이원성**
    - 자료없음
  - \* **생식독성**
    - 자료없음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### 가. 생태독성

- **어류**
  - [n-Butyl alcohol] : LC50 > 100 mg/ℓ 96 hr
- **갑각류**
  - [n-Butyl alcohol] : EC50 = 1983 mg/ℓ 48 hr
- **조류**
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EC50 = 14 mg/ℓ 72 hr
  - [n-Butyl alcohol] : EC50 = 28 mg/ℓ 48 hr

### 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**잔류성**
  - 자료없음
- **분해성**
  - 자료없음

### 다. 생물 농축성

- **생물 농축성**
  - 자료없음
- **생분해성**
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] : Biodegradability = 22 (%)

**라. 토양 이동성**

- 자료없음

**마. 기타 유해 영향**

- 자료없음

**13. 폐기 시 주의사항****가. 폐기방법**

-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소각 처리할 것.
-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시오.
- 분리한 후 남은 물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시오.
- 증발·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시오.
- 응집·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.
- 분리·증류·추출·여과·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리 후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시오.

**나. 폐기시 주의사항**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**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****가. 유엔번호 (UN No.)**

- 2734

**나. 유엔 적정 선적명**

- Amines, liquid, corrosive, flammable, n.o.s. or Polyamines, liquid, corrosive, flammable, n.o.s.

**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**

- 8

**라. 용기등급**

- II

**마. 해양오염물질**

- 해당없음

**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**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E (Non-water-reactive flammable liquids)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C (Flammable corrosive liquids)

**15. 법적 규제현황****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**

- 작업환경측정물질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n-Butyl alcohol)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 ; Dimethylbenzene)
- 노출기준설정물질
  - 해당됨 (n-Butyl alcohol)
  - 해당됨 (Xylene ; Dimethylbenzene)
  - 해당됨 (1,3-Bis (Aminomethyl) benzene adduct)
- 관리대상유해물질


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n-Butyl alcohol)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 ; Dimethylbenzene)
-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n-Butyl alcohol)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 ; Dimethylbenzene)

#### 나.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독물
  - 해당없음
- 관찰물질
  - 해당없음
-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 ; Dimethylbenzene)
- 사고대비물질
  - 해당없음
- 취급제한물질
  - 해당없음

####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위험물에 해당됨 : 제2석유류 (지정수량 : 1000리터(비수용성액체), 2000리터(수용성액체)) (다만,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.)
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(지정수량 : 제4류 제2석유류(비수용성))
- [n-Butyl alcohol] : (지정수량 : 제4류 제2석유류(비수용성))

####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(폐유 액체상태)에 해당됨.

#### 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
  - 해당없음
- EU 분류 정보
  - \* 확정분류 결과
    - [n-Butyl alcohol] : R10 Xn; R 22 Xi; R37/38-41 R67
  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R10 Xn; R20/21 Xi; R38
  - \* 위험 문구
    - [n-Butyl alcohol] : R10, R22, R37/38, R41, R67
  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R10, R20/21, R38
  - \* 예방조치 문구
    - [n-Butyl alcohol] : S2, S7/9, S13, S26, S37/39, S46
  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S2, S25
- 미국 관리 정보
  - \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    - 해당없음
  - \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    - [n-Butyl alcohol] : 2267.995 kg 5000 lb
  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45.3599 kg 100 lb
  - \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    - 해당없음
  - \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    - 해당없음
  - \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    - [n-Butyl alcohol] : 해당됨
   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해당됨
- 로테르담 협약 물질
  -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물질
  -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  - 해당없음

**16. 그 밖의 참고사항****가. 자료의 출처**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14호(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SIS, NLM, SIDS, IPC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**나. 최초 작성일자**

- 2012-08-16

**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**

- 1 회, 2013-08-02

**라. 기타**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